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9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9. 7
다. 상정일자 : 2005. 9. 9
- 2005. 9. 9(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005. 12. 9(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나.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사회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

다. 주요내용

- 구 성
 - 대표협의체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부군수"를 "군수"로 하고 "실무 협의체 위원장"을 추가(제3조제2항)
 -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안(제3조제3항)
 - 실무협의체 위원중 당연직위원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 실무담당(6급) 및 보건소 실무담당(6급)으로 변경안(제3조제5항)
- 위원명단공개 :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 규정 신설안(제4조)
- 간사 및 직원 : 간사를 둘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 삭제안(제8조)
- 군의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신설안(제15조의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임 :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부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동조제2항중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부군수”를 “군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사회복지과 실무담당, 보건소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협의체 운영지원) 군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되어, <u>부군수</u>, <u>사회복지과장</u>, <u>보건소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6. (생략)</p> <p>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u>부군수</u>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p> <p>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되어, <u>사회복지과장</u>, <u>보건소장</u>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5. (생략)</p> <p>(신설)</p> | <p>제3조(구성) ① <u>공동위원장</u></p> <p>②</p> <p>--- <u>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u></p> <p>1. 6.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u></p> <p>⑤</p> <p><u>사회복지과 실무담당, 보건소 실무담당</u></p> <p>1.-5.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1(위원회 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
| <p>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3조(경비지원) (생략)</p> <p>(신설)</p> | <p>제7조(간사 및 직원)</p> <p>(삭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1(협의체 운영지원) 군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